

문서번호	ESG-06-협력사 행동규범
최종 수정일	2023.04.26
관리담당	관리팀

인팩 일렉스(주) 협력사 행동규범

1. 개요

2. 인팩 일렉스 협력사 행동규범

- 1) 기업윤리
- 2) 인권 및 노동
- 3) 안전보건
- 4) 환경
- 5) 경영시스템

1. 개요

인팩 일렉스는 기업 시민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며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 국제 규범 및 기준 (세계 인권 선언, UN 기업인권 이행 지침, UNGC 10대 원칙,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가이드 등) 그리고 법적인 요구사항 등을 기준으로 본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모든 협력사가 모든 국제규범 및 기준과 본 행동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2. 인팩 일렉스 협력사 행동 규범

1) 기업 윤리

(1) 투명경영 및 반부패, 불공정 거래 방지

-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②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 돈세탁 및 갈취를 금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모든 비즈니스 상호작용에서 각 국가별 최고 수준의 기업 윤리 기준을 준수 해야한다.
- ③ 시장지배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④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조건 등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안 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안된다.
- ⑤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
- ⑥ 금융법을 존중하며,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뇌물 또는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승인, 제공 또는 수락하지 않아야 하며, 이 금지 사항은 제3자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업을 획득 및 유지하거나,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약속, 제공, 허가 또는 수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⑦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수행하고 회계장부 및 사내 시스템에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 해야한다. 노동, 안전보건, 환경, 사업활동 구조, 재무 상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는 해당 규정 및 일반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 되어야 한다.
- ⑧ 적용 가능한 모든 국내 및 국제 무역 금수 및 제재를 준수해야 하며, 제재 위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2) 이해상충 방지

- ① 협력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근로조건을 준수 해야 한다.
- ② 협력사의 임직원은 부장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 금지사항에는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받는 행위를 포함한다.

(3) 정보 보호

- ①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구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으며, 업무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 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된다.
- ② 고객사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야하며, 협력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침해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책임있는 자재 구매

- ① 제품에 포함된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등의 분쟁광물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과 제련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하며, 해당 프로세스에 따르 광물 및 원재료의 제련소 등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윤리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사회, 환경적 이슈 점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광물 및 원재료를 주로 취급하는 경우, 해당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인권침해, 윤리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이슈와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하거나 대외 인증을 받도록 노력한다.

(5) 위조품 방지

- ①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된다.
- ②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
- ③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수출 제한 준수

- ① 수출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수출제한, 경제 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해서는 안된다.
- ③ 수출제한, 경제 제재 관련 법률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고객사의 요청시 현황파악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인권 및 노동

(1) 차별 금지

- ① 협력사는 나이,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장애여부, 가중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및 승진,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하면 안된다.
- ②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 있어 임직원을 차별하면 안된다.
- ③ 임직원의 모집, 채용 시 직무에 연관이 없는 신상정보는 요구하지 않는다.

(2) 인도적 대우

- ①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한다.
- ② 임직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 고지하며, 자발적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
- ③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임직원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피해자에게는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전환배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가해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임금 및 복리후생

- ① 협력사는 국가별 노동관계법률 및 제도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고,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된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 ②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 한다.
- ③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임직원의 경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근로시간

- ① 협력사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 하며,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 ② 협력사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희망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시행해야 할 경우 사전 동의를 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 ③ 노동관계법에 준하여 임직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5) 강제 노동 금지

- ① 협력사는 국가별 노동관계법률에 준하여 임직원을 근로시켜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신분증, 사증 등의 제출을 강요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폭행, 폭언, 협박, 감금 등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 한다.
- ③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나 채무관계에 의한 강제노동 등에 관하여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며, 상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아동 노동 금지

- ① 협력사는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금지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인 서류를 통해 임직원 또는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 ②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상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업무에 투입하지 않으며, 연소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해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아동노동에 관련되어 있거나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 결사의 자유 보장

- ① 협력사는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적법한 교섭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

3) 안전보건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① 협력사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며, 사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안전보건 사고 예방을 위해 조직구성, 계획, 절차, 점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2) 위험성 평가

- ① 협력사는 사고위험 및 유해요인에 임직원이 노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환경의 안전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임직원에게 공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기계 및 기구, 설비, 환경 등을 개선해야 한다.
- ②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임직원에게 사고위험성 및 유해요인 등에 대한 정보를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 ③ 임산부, 연소근로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안전보건상 고위험성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위험기계기구 관리 및 안전보호구 지급

- ① 협력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해야 한다.

- ②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의 사용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방호벽, 긴급 제동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 ③ 임직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보호구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해야 하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4) 사고 관리

- ①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②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시키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한 경우,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5) 보건 관리

- ① 협력사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일반검진 또는 특수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작업공간 변경, 전환배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적절한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을 제공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 ③ 임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표지, 조명, 냉난방 등을 제공하고 적절한 외부인 출입 통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6) 비상사태 대응

- ① 협력사는 화재 및 안전사고, 천재지변, 전염병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 ② 국가별 법률, 자체 계획, 매뉴얼 등에 의거하여 비상사태 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③ 비상사태 발생 시 탈출로, 유도등, 화재 감지기, 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 환경

(1)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① 협력사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며, 사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안전보건 사고 예방을 위해 조직구성, 계획, 절차, 점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2) 폐기물 관리

- ①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② 적절한 방법으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 해야 하며,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매립, 소각 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잔유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 ①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4) 수자원 관리

- ①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기준 또는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5) 대기 관리

- ①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적절한 방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기준 또는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6) 화학물질 관리

- ① 협력사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하며,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경영시스템**(1) 기업 성명서 공시**

- 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해야 하며, 그 의지를 경영진의 신년사, 내부 지침,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사내에 공유해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 보고서,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 공개할 것을 권장한다.

(2) 담당자 및 관리자 선임

- ①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 활동 업무의 실무 담당자를 선임하고, 계획 수립과 이행현황을 관리하는 감독자를 선임해야 한다.

(3) 리스크 관리

- ①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윤리, 환경, 노동, 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4) 교육 및 소통

- 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내용과 관련 법률 및 제도에서 다루는 내용을 임직원에게 교육해야 하며

추진계획 및 이행현황 등을 임직원에게 공유해야 한다.

(5) 정보 관리

- ① 협력사는 윤리, 환경, 노동, 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현황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국가별 법률, 단체, 계약을 체결한 주요 고객사 등에서 해당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6) 고충처리 제도 운영

- ① 협력사는 임직원이 윤리, 환경, 노동, 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률 및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련한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임직원이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 조롱 등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 보고해야 하며,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6) 거래처(협력사) 관리

- ① 협력사는 제품의 설계, 제도, 유통, 판매하는데 있어 계약을 맺은 거래처(협력사)에게 윤리, 환경, 노동, 인권, 안전보건 등의 요소를 관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거래처가 윤리, 환경, 노동, 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인지한 경우, 거래처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규범 준수

- ① 협력사는 고객사 또는 고객사가 지정한 제3자가 진행하는 정기적인 서면점검 또는 현장실사시 행동규범 준수여부 및 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②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해당 문서는 사업 운영에 대한 실제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 관리 되어야 한다.
- ③ 서면점검 또는 현장실사 등의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함이나 위반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